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0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송재봉 · 모경중
강득구 · 양부남 · 이주희
김성희 · 이병진 · 김문수
김태년 · 이재강 · 허종식
김 윤 · 양문석 · 박찬대
신정훈 · 이상식 · 박정현
문금주 · 임미애 · 문대림
조계원 · 이해식 · 박지원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,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사회가 복잡·다양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의 양적·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.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,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입법, 예산 심의,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,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·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,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1조)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”를 “정수 이상으로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공무원”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책지원 전문인력 임명에 관한 적용례)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기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보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중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 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 회의원 <u>정수의 2분의 1 범위</u> 에 <u>서</u>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	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 력) ① ----- ----- ----- <u>정수 이상으로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<u>지방 공무원</u> 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② -----「지 <u>방공무원법</u> 」 제25조의5에 따 <u>른 임기제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